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8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문진석 · 이주희 · 김기표
이건태 · 박정현 · 전현희
김 윤 · 이정문 · 김의겸
박상혁 · 김우영 · 문대림
임호선 · 이연희 · 김동아
이상식 · 김태선 · 윤종균
강득구 · 이학영 · 안호영
부승찬 · 우원식 의원
(23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소득 · 자산 · 교육 · 건강 ·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 · 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 ·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소득 · 자산 · 교육 · 건강 · 주거 등 개별 영역별 불평등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을 뿐,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을 고려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 체계와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 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민간전문가 각 1명인 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두고,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불평등대응위원회는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불평등대응위원회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평가·공표하며,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매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카.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타.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평등”이란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다차원적 불평등”이란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란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4. “불평등 해소 정책”이란 불평등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불평등 해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차원적 불평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불평등대응위원회

제6조(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2. 불평등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불평등 관련 조사·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등

제16조(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수준 및 목표치
4.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6.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불평등 해소 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① 위원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매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국세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지표 산출을 위하여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및 공표와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평등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추진실적의 평가 방법·절차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재정운용과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불평등 해소 정책

제23조(소득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자산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의 경제적·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등을 해소하며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주거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정책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고·의견표명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공론화)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개선 권고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을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국회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매년 제21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
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